

등록번호	도시디자인과-1236
등록일자	2016.1.21.
결재일자	2016.1.22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광고물정비팀장	도시디자인과장	도시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신명철	김종덕	이상현	이진형	황치영	01/22 최창식
협조					

불법현수막 ZERO구 달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종합계획



도시관리국
도시디자인과

요 약 지

불법현수막 ZERO구 달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종합 계획

■ 추진근거 : 『옥외광고물등 관리법』 제3조·제4조·제10조

■ 추진배경

- 무분별한 불법유동광고물 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비대책 필요

■ 기본방향

- 365일 24시간 지속적인 정비체계 구축
-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
- 동별 정비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자율 정비

■ 추진계획

- 도시디자인과 전직원 참여 휴일, 새벽시간 집중 단속
-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확대
- 불법광고물 신고 ‘공무원 모니터링단’ 내실화
- 동별 정비협의체 구성·운영 및 매월 캠페인 개최

■ 기대효과

-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현수막 부착 의지 완전 근절
- 공무원과 중구민의 협업을 통한 365일 24시간 신고·정비체계 유지하여 불법현수막 없는 “ZERO 중구” 실현

■ 행정사항

- 매월 불법광고물 캠페인 개최 : 동주민센터
- 광고물정비 동행정평가 반영 : 자치행정과
- 각종 광고물정비 사업 홍보 : 공보실

목 차

I . 추진 근거

II . 추진 배경

III . 현실 태

IV . 문제 점

V . 추진 방향

VI . 추진 계획

VII . 기대 효과

VIII . 행정 사항

불법현수막 ZERO區 실현을 위한 2016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종합 계획

우리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무분별하게 난립된 현수막, 입간판, 에어라이트, 첩지류 등 불법광고물 완전 근절을 위하여 『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종합 계획』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없는 중구로 만들고자 함

I

추진 근거

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(허가 또는 신고)
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(광고물의 금지 또는 제한)
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(위반에 대한 조치)

II

추진 배경

-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광고문화 의식수준 제고 필요
- 최근 경기침체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광고물 설치 급증으로, 도시미관, 교통안전 저해 및 보행자 통행방해
- 공무원과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‘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 방안’ 필요

III

현 실 태

연도별 유동광고물 정비 현황

(단위:건)

년 도 광고물	계	2015	2014	2013	2012
계	156,078	63,941	39,770	25,696	26,671
현수막	40,135	16,228	10,092	9,618	4,197
첨지류	113,949	46,571	29,343	15,846	22,189
입간판등	1,994	1,142	335	232	285

연도별 행정처분 현황

(단위:건/천원)

년도 처 분	계	2015	2014	2013	2012
과태료	6,097 1,786,742	729 1,190,588	965 135,464	1,815 229,160	2,588 231,530
고 발	15	5	8	2	-

불법유동광고물 정비건수는 '12년 대비 매년 증가

- 현수막은 '14년 대비 60.8% 증가
- 첨지류는 '14년 대비 58.7% 증가

불법광고물 행정처분 건수는 '14년 불법현수막 완전근절 대책으로

- 과태료 부과액은 '14년 대비 778.9% 증가
- 고발의 건수 동일한 게시자에게 고발하여 총건수는 적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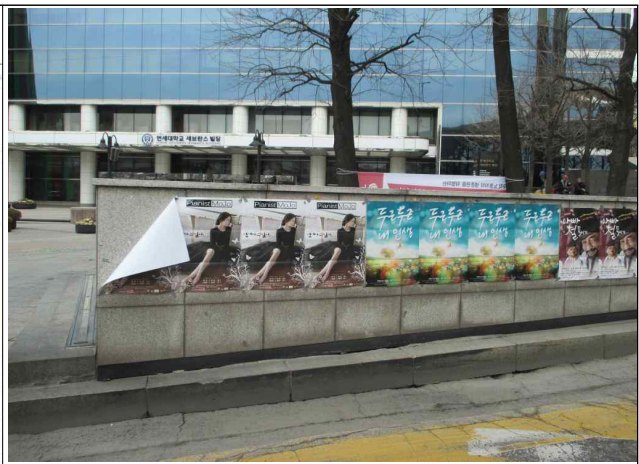
IV

문 제 점

■ 안전펜스, 현수막 등에 부착하여 보행자, 차량 등 안전사고 위험



■ 지하철역, 환풍구 등에 전단지 부착으로 거리미관 훼손



■ 인도에 입간판, 에어라이트 설치로 보행자 통행불편 야기



V

추진방향

추진목표

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으로 쾌적한 중구 실현

추진방향

- ❖ 365일 24시간 상시 정비체계 구축
- ❖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
- ❖ 동별 정비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자율 정비

추진사업

【 24시간 정비체계 구축 】

- ❖ 평일·휴일·야간 등 24시간 정비 추진
- ❖ 전직원·용역 활용 주말과 새벽시간대 집중 정비
- ❖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
- ❖ 부착방지판 설치로 불법침지류 부착 사전 차단
- ❖ 불법현수막 신고 “공무원모니터링단” 운영 내실화

【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강화 】

- ❖ 불법현수막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
- ❖ 재적발시 기존부과액의 30% 가산
- ❖ 2회이상 계침시 형사고발

【 주민자율주도 정비 】

- ❖ 동별 광고물정비협의체 구성·운영
- ❖ 동별 광고물정비 캠페인 개최
- ❖ 저소득층 대상 불법침지류 수거보상제 운영

VI

추진계획

1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정비체계 구축

무분별하게 난립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휴일정비

- 정비대상 : 현수막, 입간판, 벽보 등
- 정비인원 : 도시디자인과 전직원(24명)
- 정비방법 : 매주 토,일(10시~16시) 1개조 3명씩 순환근무
- 조치사항 : 발견시 즉시수거 및 과태료 부과, 고발.
 ☞ 공무원 단속시간외에는 주민 수거보상제 활용

야간정비

- 정비대상 : 에어라이트, 입간판, 현수막
- 정비인원 : 광고물정비팀(10명)
 - 정비수량이 많을 시 가로환경과 협조
- 정비방법 : 매주 1회 19시~
- 조치사항 : 발견시 즉시수거 및 과태료 부과, 고발

※정비근무현황

구분	평일	휴일	야간	비고
시간	오전/오후	10시~16시	19시~22시	
인원(명)	3	24 (1개조3명)	10	

2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

무차별 대량 배포 및 부착되는 불법유동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, 주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

*2015.11월부터 추진중

- 추진기간 : 2016. 1 ~
- 수거대상 : 현수막(일반형 및 족자형)
- 참여인원 : 수거희망주민 50명(現12개동 21명 참여 활동중)
- 소요예산 : 20,000천원(시비100% 15년 예산 이월)
- 보상금액 : 1인 1일 10만원, 월200만원 한도
 - 단가 : 일반형 2,000원, 족자형 1,000원
- 지급방법 : 현수막 정비 후 동사무소 제출(전후사진 등)

불법 첩지류 수거보상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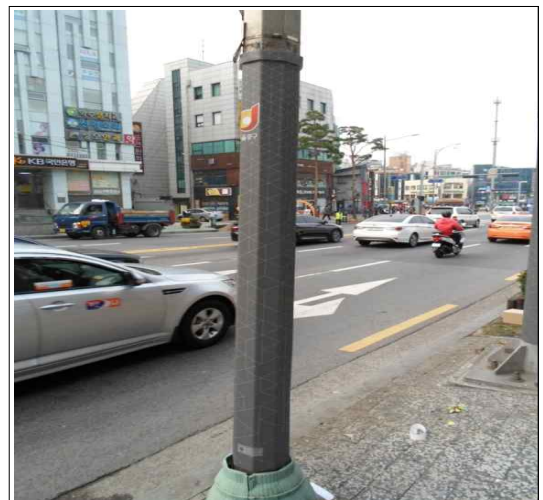
- 추진기간 : 2016. 2.~10.
- 수거대상 : 벽보, 전단지 등
- 참여인원 : 관내 저소득층 50명 내외
- 소요예산 : 15,000천원(구비100%)
- 보상금액 : 1인1주당 2만원(최대 월 10만원 이내)
- 지급방법 : 첩지류 정비 후 동사무소 제출(전후사진 등)

구분	현수막		벽보/포스터		스티커		전단지 (명함형 포함)	
기준	3m ²		30cm×40cm		10cm×10cm		-	
	이상	이하	이상	이하	이상	이하	일반광고	청소년 유해광고
단가(원)	1,000	500	100	50	200	100	10	30

3 「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」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

공공시설물(전신주, 교통신호기, 가로등 등)을 보호하기 위한 “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”의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를 통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심거리를 조성하고자 함.

- 추진시기 : 2016년 상반기·하반기 각 1회
- 추진방법
 - 조사기간 : 2016. 5월 (1개월)
 - 조사지역 : 관내 전지역 (교차로, 관광특구지역 등 집중 조사)
 - 조사반 편성 : 광고물관리팀 7명
 - 중점조사대상
 - ⇒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훼손 여부 및 관리 실태조사
 - ⇒ 신규설치 대상 지역 물량조사
 - ※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
 - 설치지역 : 조사 후 별도 계획수립 추진
 - 설치물건 : 전신주, 교통신호기, 가로등, 배전함 등
 - 소요예산 : 20,000천원 (상·하반기 각 10,000천원)
- 조치사항
 - 부착방지판 설치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



4 불법유동광고물 “직원 모니터링단” 내실화

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직원 출퇴근시 불법현수막 및 첩지류 발견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정비하고자 함

- 추진근거 :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신고(행정자치부)
- 활용인원 : 49명(도시디자인과24, 도시관리국25)
- 신고내용 : 출·퇴근, 출장 또는 거주지 주변에서 불법광고물 발견시 ‘스마트폰신고앱’ 활용 실시간 불법광고물 신고
- 조치사항 : 매일 신고건수 확인후 당일 정비
- ※ 추진실적 및 효과 등을 분석하여 추후 확대운영

5 상습 불법유동광고물 설치자 행정처분 강화

- 추진근거
 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, 제20조(과태료)
- 문제점
 - 불법유동광고물 중 다수를 차지하는 분양광고의 분양업체에 지속적인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반복적·상습적 기침
 - 점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분양업체 성격상 과태료 체납 만연
- 조치사항(강화)
 - 불법현수막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
 - 재적발시 기존부과액의 30%가산
 - 2회이상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 기침시 고발 조치 병행

6 불법광고물 대구민 홍보 강화

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설치규정, 허가절차·정비내용 등을 수록한 「홍보리플릿」을 제작·배포하여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불법광고물 근절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○ 홍보용 리플릿 제작

- 제작 : 2016. 3.

- 수량 : 5,000부

- 내용

· 간판의 종류별 설치방법 및 인허가시 구비서류

·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설치시 행정조치 사항 안내

- 소요예산 : 2,000천원(5,000부 × 400원)

○ 각종 보도자료 제출

- 광고물정비분야 관련 사항에 대한 각종 일간지 보도자료 제출

- 중구광장, 인터넷홈페이지, 동주민센터 회의자료 등재

7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추진

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공무원, 주민 등이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어 경험이 풍부한 능력있는 광고물정비업체를 선정·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완전 근절코자 함

○ 정비기간 : 2016. 3 ~ 10.(불법광고물 집중계시기간)

○ 정비시기 : 휴일 및 야간(필요시)

○ 정비대상 : 불법현수막 및 첩지류

○ 업체선정 : 수의계약(관내 소재 업체)

○ 소요예산 : 25,000천원

8 불법광고물 추진협의회 구성 및 캠페인 운영(동주민센터)

주택가 골목길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각종 현수막, 벽보 등에 대하여 동별 광고물정비 추진협의회 구성 및 캠페인을 개최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- 정비기간 : 2016. 2월 ~ 11월
- 정비시기 : 매월 1회
- 정비대상 : 불법현수막 및 첩지류
- 구성인원 : 각 동 직능단체, 희망주민 등
- 조치사항 : 매월 1회 이상 캠페인 실시 및 실적보고

※ 연말 동행정평가 반영

< 동별 광고물정비 실적 평가자료 >

평가대상 업무	세부 평가항목	배점
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분야	소 계	100
	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(수립시 자율정비구역 지정)	25
	동별 광고물정비추진협의회 구성	10
	추진협의회 구성원 캠페인 참여횟수	25
	추진협의회 구성원 캠페인 참여인원	15
	불법광고물 수거실적	20
	기한내 보고기일 이행여부	5

VII

기 대 효 과

- 법규정내에서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행정처분 (과태료, 고발)으로 불법현수막 부착 의지 완전 근절
- 공무원과 중구민이 365일 24시간 신고·정비체계 유지하여 불법현수막 없는 “ZERO 중구” 실현

VIII

행 정 사 항

- 동별 “불법광고물 정비 추진협의회” 구성·운영 계획 및 「불법광고물 ZERO의 날」 캠페인 개최 : 동주민센터
- 동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 보고
 - 캠페인 운영 및 정비 실적 보고 : 정비후 3일 이내
 - 정비 전·후 사진 제출(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활용)
 - ※ 추진실적은 연말 동 행정실적평가에 반영
- 광고물정비 동행정평가 반영 : 자치행정과
- 각종 불법광고물 관련 내용 홍보 : 공보실
- 휴일정비시 급량비 지급 : 기획예산과